

商標法上 故意의 意義解釋

〈日本最高裁判所 1981年 2月 24日 判決, 1980年(行ツ)第139號〉

1. 上告人: X

2. 被上告人: Y

3. 判決主文

本件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費用은 上告人의 負擔으로 한다.

4. 事件概要

本件은 藥劑등을 指定商品으로 하는 「中央急救心」의 文字를 縱書한 登錄商標의 商標權者가 그 取扱하는 心臟藥에 대해 ① 「中央」의 작은 文字를 縱書하여 그 右側에 「急救心」의 큰 文字를 左橫書한 商標, ② 「中央」의 작은 文字를 左橫書하고 그 아래에 붙여서 「急救心」의 큰 文字를 縱書한 商標를 使用하였음이 藥劑를 指定商品으로 하는 「救心」의 商標와의 關係로서 故意에 의한 類似商標의 사용등에 該當한다 하여 登錄商標의 取消理由가 되느냐의 與否가 爭點이 된 事例이다.

5. 判決要旨

商標法51條1項의 規定에 의거하여 商標登錄을 取消하려면 商標權者가 指定商品에 대해 登錄商標에 類似한 商標를 使用하거나 또는 指定商標에 유사한 商標에 대하여 登錄商標 혹은 이에 유사한 商標를 使用함에 있어 同使用結果 商品 品質의 誤認 또는 他人의 業務에 關聯된 商品과 混同시킬 것을 認識하고 있었음만으로 充分하며 所論과 같이 반드시 他人의 登錄商標 또는 周知商標에 近似시킨다는 意圖로서 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까지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고 解釋함이 妥當하므로 이와 同趣旨의 原審判斷은 正當하므로 原判決의 所論에 違法이 없다.

6. 解説

이번 判決은 日本에서는 最初의 것이기는 하나 舊規定時代의 判例를 踏襲한 것이다.

그러나 取消審判에 관한 本件判決에서 爭點이 되어있는 要點은 商標權者가 指定商品에 대해 登錄商標에 유사한 商標를 使用하거나 지정商標에 유사한 商標에 대하여 登錄商標 혹은 이에 유사한 商標를 使用함에 있어 그 使用결과 商品의 品質誤認 또는 他人의 業務에 關聯된 商品과 混동시킬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만으로 充分하며 他人의 登錄商標나 周知商標에 近사시키려는 의도로써 이를 사용하고 있었음까지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商標의 侵害看倣는 그 침해의 결과에 대하여 不法, 違法性을 要求하는 것이므로 他人의 周知商標나 登錄商標에 近사시키고 있었다는 不正使用者의 主觀의 意圖를 要求하지 않음은 곧 商標侵害가 行爲不法, 違法을 要求하지 않은 것이 된다. 또한 故意與否에 대해서는 需要者 保護의 立場에서 品質誤認을 發生시킬 可能性을 인식하여 出所混同 및 그 可能性을 인식하고 있었음만으로 充分하다는 점에 注視해야 한다는 意見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他人의 商標나 다른 商標에 近사케 하고싶다는 商標權者의 의도는 需要者의 오인, 混동등과는 無關하며 主觀의인 意思와 매우 좁은 範圍의 主觀에 限定하는 결과가 되나 이는 商標 權자의 부정행위의 意識 또는 欲望이 되며 부정행위의 惡意를 意味한다.

어쨌든 이 판결은 舊法以來의 같은 立場에 있는 것이기는 하나 오늘날에도 타당한 判決이라는 見解등이 支配的이다.